

4. 식물보호관련법규

1. 농약관리법

● 제1조(목적)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문제1.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 (), () (), (),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동식물(달팽이·초록 또는 야생동물, 이끼류·갑·독)

나. 농작물의 ()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 생리기능

문제2.

1의2. “천연식물보호제”

가. (), (), () 또는 ()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진균,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 또는 ()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문제3.

2. “품목”이란 개별 ()과 ()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유효성분의 비율, 제제 형태

문제4.

3. “()”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원제

문제5.

3의2.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약활용기자재, 농촌진흥청장

나. () · () · () · ()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살균 · 살충 · 제초 · 생장조절

문제6.

4. “()”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조업

5. “()”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원제업

6. “()”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수입업

7. “()”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판매업

8. “()”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방제업

- 제3조(영업의 등록 등)

- ① 제조업 ·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장

-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시장, 군수, 구청장

-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판매관리인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 (), ()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인력, 시설, 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의2. (영업의 신고)

()

- ① 방제업 중 () 또는 (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등)

-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 ② 농약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 (), (), ()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①)”라 한다)를 첨부하여 (②)와 함께 (③)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①시험성적서

②농약의 시료

③농촌진흥청장

- 제11조(품목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 ① 농약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으로 한다.

10년

- ② 제조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까지 ()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개월, 농촌진흥청장

●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1.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2.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 및 ()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화학적 분석**) (**독성 시험성적**) (**원제의 시료**)

3.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 ② 독성시험성적서
- ③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 ④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 ⑤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4. 원제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시료의 양

원제 : 50ml(g)

유제, 수용제, 수화제, 분제 등의 제형 : 200ml(g)

* 재검사 15일 이내.

● 모집단 형성

분제 입제 : 50톤

그외 : 10톤

●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 (),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3.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 품목등록번호 또는 제품등록번호
-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명칭 및 제제형태
-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 포장단위
- 농작물별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사항
 - 맹독성 · 고독성 · 작물잔류성 · 토양잔류성 · 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 저장 · 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상호 및 소재지
-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 시 제품의 규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 약효보증기간
-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사항

●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1.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6.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30.>

개인보호장구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7] <신설 2022. 12. 14.>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

1.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 1) 방진 마스크 (2급) 이상
- 2) 화학물질용 보호복 (4형식) 이상
- 3)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4) 흡착포, 흡착제 및 삽

나. 보통독성 이하의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 1) 니트릴글로브 또는 라텍스글로브 이상의 장갑
- 2) 흡착포, 흡착제 및 삽

2.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원제 외의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제1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것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 ①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 ②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 ③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 ④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 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⑤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 ⑥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 ① 농약등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 ②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 초장을 사용할 것
- ③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 ④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 보관할 것
- ⑤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문제. 아래의 시스템은 무엇인가?

- 1. 농약 제조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문제.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치하는 위원회는 무엇인가?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그 벌칙.

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을 가한자
 제조업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자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자
 금지 제한 명령을 어긴자
 거짓으로 표기한 자

사람 죽이면 징역 10년, 벌금 1억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2. 식물방역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자식물 · 양치식물 · 이끼식물 · 버섯류, 씨앗 · 과실 및 가공품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 (), ()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진균 · 점균 · 세균 · 바이러스

나. (), (), (), ()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

다.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잡초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을 말한다.

용기 · 포장, 흙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 및 ()을 말한다.

검역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 규제병해충

(1) 검역병해충

① 급지병해충

② 관리병해충

(2) 규제비검역병해충

(3) 잡정규제병해충

5. “()”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병해충

-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

7. “()”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잠정규제병해충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 (),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독재가구, 폐지, 철도의 침목

8. “()”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분포조사

- 가. 병해충의 ()에 대한 조사활동

분포지역

- 나. 병해충의 () 및 ()에 대한 조사활동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

9. “()”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 및 ()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역학조사

예방 및 확산

가. 병해충의 () 추적을 위한 활동

감염원

나. 병해충의 () 규명을 위한 활동

유입경로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 · ()을 방지하기 위하여 () · () ·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입, 확산

검역, 예찰, 방제

●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 · 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 ·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병해충위험분석

2. 병해충위업분석의 방법 및 순서

가) 병해충 확인 단계

나)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 경제적 손실 판단 후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 결정

다)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조치 방안 선택

- 검역 등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나 ()에 넣을 것

밀폐형 컨테이너, 용기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천막

3. 그 밖에 ()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검역본부장

검역방법의 종류

- ① 서류검역
- ② 현장검역
- ③ 실험실정밀검역
- ④ 격리재배검역

제21조(경유기간)

7일 이하

제32조(방제계획)

()은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년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벌금 3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300만원